

# 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0 - 37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04월 26일

##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.

### 1. 관련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, 제76조
- 방송법 제15조, 제32조, 제70조, 제71조, 제73조, 제100조
-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, 78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

### 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 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

(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☎02-750-2940)

붙임 : 체납자 명단 1부.